

## 經濟的 環境變化에 따른 犯罪對策

崔 榮 一  
(警察大 教授)

### I. 序 言

解放以後 우리나라는 政治, 經濟, 社會 等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變化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의 質的 및 量的인 側面에서의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社會的 現象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포괄하고 있는 諸般 與件의 變化와 병행하여 유사한 변천과정을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社會的 與件이 빠른 속도로 變化되기 시작한 1960年代以後 犯罪의 發生件數는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種類도 다양화되고, 發生범위도 광역화되었으며 기동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與件이 격변하였던 1980年代以後 犯罪의 發生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냄으로써 범죄의 발생이 일상화되고 만성화되어 國民의 正常的인 社會活動을 위협하는 水準에 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時期에 선포된 犯罪에 대한 戰爭의 선언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선택된 정책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犯罪에 대한 戰爭에 승리하기 위한 對策을 강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원인과 種類 및 증가추세를 分析하여 이를 통하여 對策을 수립하고 이의 理論的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方向의 研究는 對犯罪戰爭에 있어서 重要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本論文은 犯罪發生의 諸般 犯因性 環境中에서 經濟的 環境變化가

범죄의 發生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對策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의 理論的 背景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經濟成長과 이에 따른 여러 經濟構造的인 變化는 犯因性 環境의 變化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變化는 범죄발생의 추세와 종류 및 지역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經濟成長과 經濟變動 등의 經濟的 環境 및 構造的 變化가 범죄발생과 어떠한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여러 學者들의 經驗적인 研究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理論的인 側面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양상을 分析함으로써 최근의 범죄발생의 증가추세에 관한 原因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제시하여 범죄의 근절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데 本研究의 目的을 찾아 볼 수 있다.

本研究의 順序를 보면 Ⅱ章에서는 經濟成長 및 變動 등에 연유하여 발생하는 經濟構造 및 問題點을 설명하고 이러한 變化와 범죄발생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Ⅲ章에서는 우리나라의 經濟的 環境變화와 犯罪發生과의 관계를 先行된 研究結果를 토대로 하여 分析하고 그 原因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Ⅳ章에서는 이에 대한 對策과 結論을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本研究에서 사용된 資料는 理論的 考察部分을 위하여 國內外的 犯罪學에 관한 論文을 필두로 하여 刑事政策研究院에서 發刊한 多樣的 研究論文들을 참조하여 先驗的인 研究를 검토하였으며 統計資料는 經濟企劃院의 韓國統計年鑑과 治安本부의 警察統計年報 및 犯罪分析 및 大檢察廳의 犯罪分析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 Ⅱ. 犯罪發生의 經濟環境的 要因에 관한 理論的 考察

本章에서는 經濟의 成長과 變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構造的 및 環境的 變化를 언급하고 이러한 變化가 범죄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學者들의 先行的인 研究結果를 검토하였다.

범죄의 發生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對策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의 理論的 背景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經濟成長과 이에 따른 여러 經濟構造的인 變化는 犯因性 環境의 變化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범죄발생의 추세와 종류 및 지역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經濟成長과 經濟變動 등의 經濟的 環境 및 構造的 變化가 범죄발생과 어떠한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여러 學者들의 經驗적인 研究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理論的인 側面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양상을 分析함으로써 최근의 범죄발생의 증가추세에 관한 原因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제시하여 범죄의 근절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데 本研究의 目的을 찾아 볼 수 있다.

本研究의 順序를 보면 Ⅱ章에서는 經濟成長 및 變動 등에 연유하여 발생하는 經濟構造 및 問題點을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와 범죄발생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Ⅲ章에서는 우리나라의 經濟的 環境 변화와 犯罪發生과의 관계를 先行된 研究結果를 토대로 하여 分析하고 그 原因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Ⅳ章에서는 이에 대한 對策과 結論을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本研究에서 사용된 資料는 理論的 考察部分을 위하여 國內外的 犯罪學에 관한 論文을 필두로 하여 刑事政策研究院에서 發刊한 多樣的 研究論文들을 참조하여 先驗的인 研究를 검토하였으며 統計資料는 經濟企劃院의 韓國統計年鑑과 治安本부의 警察統計年報 및 犯罪分析 및 大檢察廳의 犯罪分析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 Ⅱ. 犯罪發生의 經濟環境的 要因에 관한 理論的 考察

本章에서는 經濟의 成長과 變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構造的 및 環境的 變化를 언급하고 이러한 변화가 범죄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學者들의 先行的인 研究結果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범죄를 발생시키게 되는 犯因性 要因중에서 經濟現象의 變化에 의한 것은 대체로 經濟成長, 經濟變動 및 絶對的 내지 相對的 貧困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分類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研究結果들을 요약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經濟成長

經濟成長이란 經濟規模의 擴大 또는 生産物量의 增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은 短期的으로는 生産要素의 增加投入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方法에 의한 長期的인 成長은 기대할 수 없다. 즉 長期的으로 生産要素의 增加投入 뿐만 아니라 經濟構造의 改善과 社會構造 및 制度의 改良과 價値觀의 變化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반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生産要素의 增加投入에 의하여 經濟成長이 이루어지지만 經濟內部構造 및 經濟를 포괄하고 있는 諸般 與件 및 制度가 개선될 때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경제성장은 다시 여러가지 與件의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순환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經濟成長으로 인하여 發生하게 되는 經濟構造的인 側面에서의 變化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면 대체로 都市化,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른 過消費, 사치풍조 및 相對的 貧困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 1) 都市化

都市化란 人口의 都市集中現象을 말하며 그 水準을 측정하는 데는 總人口에 대한 都市人口의 比率인 都市化率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도시화현상은 經濟成長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政治, 社會的 要因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人口의 都市集中現象은 農村地域의 流出要因과 都市地域의 誘引要因이 부합될 때 가속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經濟의 高度成長期에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都市化의 가장 중요한 要因은 經濟成長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經濟成長으로 인하여 農業部門의 相對的 低成長으로 야기된 所得水準의 相對的 低位 및 農業部門의 成長에 의한 과잉농업노동력의 포화상태가 농촌지역의 人口流出要因이 되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工業의 都市地域에서의 立地 등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확대, 工業部門의 高成長으로 인한 도시지역 소득수준의 상대적 우위 및 이러한 公업부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社會間接資本拖設의 집중적인 확충에 따라 도시지역에 생활편익시설 및 교육, 의료시설 등이 편중분포되게 되는 바 이와 같은 요인들이 都市地域의 誘引要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經濟成長이 지속될수록 都市化現象은 점차 심화되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都市問題가 대두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화현상이 犯罪의 發生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려고 한 先行된 研究들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up>1)</sup>L. Wirth, E. Burgess, W. Thomas, 등의 社會學者들이 주장하는 社會構造理論으로서의 社會解體論을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도시화는 都市人口 및 生活의 異質性으로 인하여 集團關係가 비인간적이며 분할적 및 피상적이고 때로는 약탈적인 관계로 까지 인관관계를 변화시키게 되어 集團間에 상호대치되는 社會構造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都市居住者들의 생활은 익명적, 고립적, 세속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변화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화가 진행될 수록 심화되어 사람들간의 개인적인 동정심과 친밀감이 점차 소멸되어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都市居住者들은 통합된 農村社會에서 생활할 때 발생하는 참여의식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도시화이전에 敎會와 家庭에 의한 道德의 가르침은 學校와 같은 非人間的인 制度와 影響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社會解體를 유발하는 사회적 기피현상과 자아억제의 결핍을 불가피하게 하여 犯罪의 增加를 가져오는 무구범의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O. Galle, R. Schnitt 등의 學者들에 의하면 都市化는 都

1) 金甫煥, "都市化와 犯罪의 추세", 地方行政 1990, 5., pp. 31~33.

市人의 심리적 긴장이나 욕구불만을 고조시키게 되어 범죄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는 심리적 긴장理論이다. 이 理論에 의하면 都市化는 都市地域人口의 過密化, 住宅難, 交通難 등을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것은 도시생활의 심리적 긴장과 갈등 및 욕구불만을 증진시키게 되어 범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사회구조해체론이거나 심리적 긴장이론이거나 간에 도시화는 범죄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要素<sup>2)</sup>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犯因性 要因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人口의 과잉집중에 따른 사회적 마찰증대
- ② 생활의식, 행동의 다양성이나 價値觀의 相異에 따른 규범의식의 저하
- ③ 核家族化에 따른 가정의 기능저하
- ④ 個人의 고립화, 익명성, 비인격성, 근린관계의 解體
- ⑤ 무관심과 정서회박
- ⑥ 불건전한 오락, 소비, 자극성, 빈민지역형성
- ⑦ 社會的 一體感의 결여
- ⑧ 경쟁사회라는 정신적 압박
- ⑨ 장물치리나 罪跡의 인멸용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가 안고 있는 犯因性 要因들은 都市化가 진행될 수록 증폭되어 범죄의 증가를 유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범죄율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2. 産業構造의 變化

經濟의 成長이 계속될 수록 經濟의 外的 環境도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內部構造인 産業구조도 점차 高度化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産業構造란 일반적으로 國民總生産에 차지하고 있는 各 産業의 比重을 말하며 이러한 구조는 C. Clark에 의하면 經濟가 成長할

2) 李基鎬, 都市犯罪의 特徵과 犯罪代策, 전게서, pp. 41~44.

수록 1次産業에서 2, 3次産業으로 그 比重이 移行된다고 하며 이러한 현상을 産業構造의 高度化라고 한다. 즉 經濟가 점차 先進工業國水準에 접근하게 될 수록 經濟全體에 차지하는 農林水産業部門의 比重은 점차 감소하게 되며 그 비중은 2次産業인 鑛工業部門으로 이전되고 최종적으로는 3次産業인 서비스 및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比重이 증가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産業構造의 變化는 노동력의 고용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며 또한 해당 산업부문의 생산이 증대하며 그 부문에 속한 産業體數의 增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외적으로 해당 산업부문의 기업체수의 증가와 고용인력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진행되는 中期段階에서는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증가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은 重化學工業은 일반적으로 資本集約型의 産業에 해당되는 것으로 特定地域에 大規模의 設備를 통하여 規模經濟를 실현할 수 있는 裝置産業으로서의 特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특정지역에 산업시설이 집중적으로 立地하게 되고 이의 가동에 필요한 많은 勞動力이 밀집됨으로써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여파가 주변지역의 經濟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적인 근로자의 集團行動이 均중심리에 의하여 폭력화되기에 용이한 경향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범죄와의 중요한 연관성은 근로자들의 직업과 범죄적 위험성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日本の 吉益脩夫(1964)<sup>3)</sup> 및 小川太郎(1981)<sup>4)</sup> 등은 일본의 경우 범죄자들의 職業生活背景에 관한 연구에서 無職者의 경우가 범죄율이 가장 높으며 對人的 마찰기회가 적고 자연을 상대로 생활하는 農林業從事者들의 범죄율이 가장 낮으며 향락적 분위기에 자주 접할 기회를 가지거나 교통, 행사 등과 같은 屋外職業에 종사하는 경

3) 吉益脩夫, 犯罪學概論, 有斐閣, 1964, pp. 161~163.

4) 小川太郎, 刑事政策論講義 第2分冊, 1981, pp. 155~159.

우및 판매,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者의 범죄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職業의 安定性 내지 직업의 환경, 숙련도 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比率이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체로 써어비스業 종사자들의 경우가 범죄에 근접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하면 產業構造가 고도화되어 갈 수록 고용구조에서 써어비스業 종사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며 범죄의 발생에 대한 가능성은 이에 따라 上昇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3. 所得水準

經濟가 성장함에 따라 國家全體의 경제규모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국민 個個人의 所得水準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國民 各者의 所得은 일률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배분하게 되므로 絕對的 水準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相對的 所得水準의 측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소위 所得分配의 不均衡問題가 대두하게 된다.

따라서 所得水準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은 대체로 所得의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수준에 관한 것으로 分類할 수 있다. 즉, 前者는 所得階層에 따라 범죄발생과의 연관성을 分析하는 측면이고 後者는 所得分配의 不均衡이 범죄의 발생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經濟成長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所得水準의 階層인 절대빈곤계층이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게 된다. 이러한 所得階層이 지배적인 단계에서는 자신들의 절대적 소득수준이 낮은 것은 自身들의 能力, 機會, 才能 등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의 문제는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정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成長이 지속됨에 따라 所得水準은 점차 生計費水準을

상회하게 되어 절대빈곤계층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他人 또는 他集團과 비교된 所得이라고 할 수 있는 相對的 所得水準이 社會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게 되며 이러한 時期에는 相對的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높은 계층에 비하여 相對的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의 원인이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의 代價가 아니며 오히려 經濟 및 政治, 社會制度 등의 모순과 各種 政策의 잘못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社會의 각 부문에 걸쳐 긴장감이 고조되며 따라서 相對的 貧困問題가 社會全體의 관심을 끌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絶對的 所得水準에 따른 所得階層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研究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 G. Coldwell(1931)의 研究에 의하면 美國의 경우 검거건수, 유죄판결건수 및 교도소수용자수에 있어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人口比率上으로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C. Thomas(1934), T. Morris(1958) 등의 연구에서도 貧困과 犯罪率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Sutherland와 Cressey(1960)의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學者들의 研究에서 中上流層의 White-Color 犯罪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들 계층의 범죄를 포함시킬 경우 그러한 주장들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貧困과 犯罪와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研究結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빈곤계층이 犯罪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觀點에서는 다음과 같은 要因들을 강조하고 있다.<sup>5)</sup>

經濟的으로 所得水準이 낮은 계층은 대체로 숙련도가 낮으므로 生計費水準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職業을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회도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서 犯罪라는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에 貧困이 犯罪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

5) L. J. Siegel, Criminology, West Publishing co, U. S. A., 1983, pp. 310-311.

이다.

그리고 所得水準이 높은 계층의 White-Color 犯罪要因에 대하여는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社會的 地位를 이용하여 독과점행위, 주식시장조작, 투기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고 함으로써 범죄와 연관이 지게 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相對的 貧困 즉 所得分配의 不均衡과 犯罪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적 박탈이론의 개념을 보면 Runciman(1966)은 몇가지 조건의 전제하여 定義하고 있다. 즉

A라는 사람은

- ① 그가 X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 ② 그가 다른 사람들 또는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그전에 또는 기대되어 지는 時期에 X라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을 알고 있을 때, 실제로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③ 그가 X라는 것을 가질 가능성을 알고 있을 때
- ④ 그가 X라는 것을 원할 때

X는 그로부터 相對的으로 박탈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네가지 條件이 전제되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은 “시기와 불공평”의 감정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시기과 불공평의 감정은 財産犯罪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所得分配의 不均衡과 연관된 불공평의 감정은 재산범죄에 대한 합리화의 도구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이론은 그후 Ebert와 Schwirian(1968), Jaxobs(1981), Danziger와 Wheeler(1975) 등과 같은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범죄를 연관시키는데 활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S.Stack(1984)<sup>6)</sup>는 Income Inequality and Property Crime이라는 그의 연구에서 상대적 박탈理論에 관한 國家間的 橫斷分析을 통하여 비교한 결

6) S.Stack "Income Inequality and Property Crime," Criminology, May 1984, pp.229~257.

과 所得分配의 不均衡이 財産犯罪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國家에 따라 각각 다른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財産犯罪이 아닌 다른 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美國의 경우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재산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를 해소하려는 政治的 努力이 부족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득분배의 불균형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이 지배적인 時期에 한해서 만이 범죄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여러 學者들의 研究結果들을 검토하여 볼 때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財産犯罪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要因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여러 學者들의 見解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犯因性 要因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經濟成長이 계속될 수록 不均衡의 程度는 점차 深化되어 가다가 先進國形態의 經濟水準에 도달하게 되면 그 정도가 점차 개선되어 지는 “U”字形태의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經濟成長의 後期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심화되어 갈 것으로 展望되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財産犯罪을 포함한 여러 種類의 犯罪發生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所得分配의 不均衡은 일반적으로 都市·農村間 및 所得階層間 등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都市·農村間 所得分配의 不均衡이 發生하게 되는 원인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의 통하여 검토하여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經濟의 高度成長過程에서 農村·農業部門의 成長이 生産性的 向上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都市·工業部門에 비하여 相對적으로 낙후됨으로써 農村·農業部門의 所得이 都市·工業部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 점과 工業成長爲主의 經濟政策 및 기타 農業部門의 制約條件 등으로 인하여 農產物價格이 工產品에 비하여 낮게 유지되어졌다는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工業爲主의 成長政策은 社會間接資本施設을 도시지역에 편중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농촌과 도시地域間의 生活便益施設 등에 대한 심한 격차를 유발하게 되어 都市化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階層間 所得分配의 不均衡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要因들 중에서 가장 주요한 原因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物價의 지속적인 上昇은 高所得層의 主所得源인 財産所得의 實質價値의 變動에 비하여 低所得層의 主所得源인 賃金所得의 實質價値를 상대적으로 크게 저하시키게 되므로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게 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게 됨에 따라 富益富 貧益貧의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時期에 住宅을 포함한 不動産價格이 여타 商品의 價格에 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대체로 不動産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高所得階層은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담을 전세금, 임대료 등의 인상을 통하여 低所得層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이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기에 일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은 부동산투기 등의 方法으로 상당한 수준의 富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方法으로 획득된 高所得層의 富는 주로 과시적인 소비지출에 활용하였고 이와 같은 풍조가 사회전반에 확산됨으로써 都農間및 階層間의 소득격차로 인한 위화감을 조성시켰으며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되는 양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사회전체의 집단간 위화감을 고조시키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적 박탈理論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 2. 經濟變動

經濟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주기적이거나 아니든 간에 또는 內部的 構造이거나 外部的 規模面에서나 간에 변화를 겪으면서 변모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變化되어 가는 經濟로부터 파생되는 諸般 現象도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닌채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本章에서는 變化하는 經濟와 연관된 犯因性 要因의 變化가 범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까지의 경우에서와 같이 先行된 研究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經濟의 變動과 범죄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집중적인 分析이 이루어지고 있는 分野는 經濟變動現象中에서 인플레이션과 景氣變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本 研究에서도 이러한 현상과 범죄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란 일반적으로 物價의 지속적인 上昇과 이에 따른 貨幣價値의 하락으로 定義할 수가 있다. 따라서 物價의 上昇은 貨幣價値의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實質所得의 감소, 소득분배불균형의 심화, 환율심터의 자극, 기대심리의 형성, 미래에 대한 不確實性的의 조성 등과 같은 경제, 사회적 및 심리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화폐가치의 하락 및 실질소득의 감소에 관한 부분과 범죄발생과 연관시킨 研究結果를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G. V. Mayer, B. Weis, A. Corne 등의 研究에서는 物價의 上昇 특히 主食 및 生活必需品價格의 上昇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어 절도범죄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日本의 高野岩太郎 등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實質賃金의 하락은 賃金上昇率이 物價上昇率을 하회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임금소득자들의 實質購買力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Renger의 연구에 의하면 實質賃金の 하락은 감소된 소득을 보충하려는 충동을 유발하게 되어 절도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며 반대로 物價의 安定期에는 이의 증가추세가 둔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貨幣價値의 變動은 經濟뿐만 아니라 政治, 社會 등의 各分野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例를 들면 1次大戰後 독일의 경우에 화폐가치의 하락정도는 화폐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하였으며 이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다소 가벼운 경우라고 할 수 있는 日本의 경우에서도 全體 社會에 미친 영향은 심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폐가치의 변동은 범죄발생건수와 종류에도 다양한 변화를 주게 된다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을 볼 수 있다.<sup>7)</sup>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절도, 강도의 증가
- ② 살인, 상해 등과 같은 人身犯의 감소
- ③ 현금절도, 금고털이 등의 범죄감소
- ④ 公務員의 범죄증가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실질소득과 화폐가치가 하락함으로써 資產價値가 감소하는 現金 보다는 資產價値가 상승하거나 유지될 수 있는 實物資產의 절취를 선호하게 되며 이의 동기는 감소된 소득의 보충을 그 충동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공무원범죄의 증가도 이와 같은 소득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進行이 前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所得分配의 不均衡을 심화시키게 되어 소득계층간의 상대적 빈곤을 유발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게 되므로 범죄발생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초래하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환물심리의 촉발이라고 할 수 있다.

物價의 上昇期에는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화폐자산소유자

7) 小川太郎, 前掲書, pp. 83~85.

들은 실물자산소유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산가치의 손실을 입게 되어 富의 再分配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貨幣資産所有者들은 자신들의 資産價値를 보존하기 위하여 實物資産으로 그 형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며 이에 따라 매집매석, 부동산투기, 가격조작 내지 담합 등과 같은 기존의 유통및 상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換物心理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되므로 환물심리는 더욱 고조되어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전반적인 經濟運用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물심리의 만연은 그 자체로 상거래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의 확산은 범죄의 발생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게 될 때 사람들은 장래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게 되고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임금인상의 요구, 소비행위의 조절, 출고조절 등을 행하게 되는 期待心理가 형성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대심리가 국민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을 때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政府의 諸般 政策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國民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犯因性要因으로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期待心理를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物價의 上昇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환물심리에 의하여 유발되는 양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資産의 가치를 보존시키기 위하여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출의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實物資産으로 전환시키거나 不動産의 보유자들은 賃貸料의 인상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통질서의 교란, 투기, 부동산價格의 급격한 상승 등을 초래하게 되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의 조성,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資産價値가 빈약하거나 거의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심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기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소득계층의 사람들에 대하여 實質賃金の 下落이나 貨幣價値의 하락 등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관한 研究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절도 등과 같은 범죄적인 방법을 통하여 실질소득의 손실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의 진행은 사람들에게 장래에 대한 不確實性을 유발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不確實性이란 예측할 수 있으며 統計的 確率로 나타낼 수 있는 위험으로서 사람들이 장래에 자신들이 실업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과 같은 불안감을 주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람들의 소비행위 또는 생산활동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때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환경으로 인하여 장래에 실업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자신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며 이와 같은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저축의 증가를 선택하여 소비지출을 억제하거나 또는 장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더 많이 자산가치를 손실하도록 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진행되기 전에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손실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前者의 형태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Sutherland와 Cressy(1956)의 연구에서와 같이 절도 등과 같은 일반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後者の 경우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過消費조장, 유흥향락 산업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범인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景氣變動

經濟는 그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成長速度가 증가하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추세를 반복하면서 成長을 계속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의 반복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나타날 때 이를 景

氣의 變動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全分析期間의 평균성장추세 보다 높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好況期이라고 말하며 반대로 이 수준에 미달할 때를 不況期이라고 불리워진다.

이와 같은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하여는 技術革新, 設備投資 등과 같은 다양한 要因들을 거론하는 여러가지 理論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投資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다. 經濟의 好況局面에서는 생산이 증가하고 在庫와 失業이 감소하며 소득이 상승하고, 投資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物價, 利潤, 金利 등이 상승하게 되는 반면에 景氣의 不況局面에서는 企業의 資金不足現象이 심화되어 투자활동이 위축되며 勞動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失業이 증가하고, 임금수준이 하락하며, 在庫가 증가하고, 物價, 金利 등이 하락하게 된다.

이와 같은 景氣變動은 上記한 바와 같이 經濟의 각 부문에 현저한 변화를 야기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범죄를 포함한 社會 각 분야에도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景氣變動과 犯罪現象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면 다양한 方法으로 두 변수간의 연관관계를 分析한 研究結果들을 찾아 볼 수 있다.

日本의 小野清一郎, 독일의 E. Ranger 등의 연구<sup>8)</sup>에서는 好況期에는 절도범 등과 같은 일반범죄는 감소되고, 사치성범죄는 다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며 반대로 不景氣에는 일반범죄는 증가하게 되고 사치성범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고 주장하고 景氣變動과 犯罪와의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utherland와 Cressey(1956)의 연구에서는 이들 두 변수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 ① 重大犯罪의 경우에는 不景氣時에 상승하고 好景氣時에는 하강하는 경향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 ② 不景氣時에 전체 범죄율은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 ③ 財産犯의 경우 불경기시에는 폭력을 쓰는 재산범죄가 증가하며 폭력을 쓰지 않는 경우의 범죄는 낮은 수준의 증가 또는 불규칙적

8) 橫籟撰, 刑事政策, 法文社, 1987, pp. 308~309.

인 경향을 보일 뿐이다.

④ 對人犯罪은 景氣의 好不況과 규칙적인 關係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少年犯罪은 호경기시에는 증가하고 불경기시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은 景氣와 범죄와의 연관關係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러한 關係가 변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研究結果라고 할 수 있다. 즉, 困窮犯罪일 수록 景氣의 變動과 상관關係가 높고 非困窮犯罪일 수록 二變數間의 상관關係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經濟犯罪<sup>9)</sup>의 경우 정상적인 경기상황하에서는 발생율이 正常水準을 유지하게 되지만 好況氣에 들어서면 所得의 증가를 恩賜하기 위한 탈세사범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所得의 增大로 인한 禁製品의 需要增加로 밀수현상이 증가하게 되며 資源의 불법유통 등이 행하여 지고 不景氣에는 소득의 감소로 인한 각종 조세사범의 증대, 財產의 해외도피증대, 부정수표단속범위 증대, 會社犯罪의 증대 등의 현상이 뒤 따르게 된다는 것이 경기의 변동과 범죄가 연관되어 있다는 事實을 입증하는 좋은 例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不景氣에는 失業이 증가하게 되어 所得水準이 낮은 계층의 家口數가 증가하며 또한 貧困階層도 확대되므로 빈곤에 따르는 범인성 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따라서 불경기에 각종 범죄의 발생율이 상승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학자들도 있다. <C. Shaw와 Mckay(1942)>. 그러나 經濟的 貧困자체가 직접적으로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文化的인 배경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經濟成長과 經濟變動의 過程에서 형성된 經濟環境의 變化가 범죄의 발생에 직접적이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발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犯因性 環境을 조성하였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범인성 環境하에서도 各 國家 또는

9) 李鐘元, 經濟犯罪論,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74, pp. 622~623

集團이 가진 倫理觀, 文化的인 背景, 政治및 社會制度 등의 與件에 따라 범죄의 發生유무, 종류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經濟的 與件만이 犯罪현상을 유발하는 유일한 犯因性 要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이 本論文이 갖게 되는 理論的 考察部分의 限界點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犯罪發生의 推移에 대한 考察

本 章에서는 實質的으로 종합적인 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犯罪發生에 관한 자료획득이 비교적 용이한 1965년부터 1989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設定하고 동기간중 전반적인 犯罪발생의 추이와 經濟的 與件變化로 인한 地域別및 職業別 犯罪發生分布의 變化를 분석하며 분석기간중의 경제적 상황과 犯罪 발생의 관계를 비교, 검토하므로써 犯罪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 1. 總犯罪發生件數의 推移

일반적으로 人口가 증가함에 따라 犯罪의 發生件數도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5년 이후 1989년까지의 기간에 人口10萬名當 犯罪發生件數는 <表 Ⅲ-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65년 인구10만명당 犯罪발생건수는 1,519件이었던 것에 비하여 1989년에는 2,469件으로 약1.6배 증가하였으며 이것을 동기간중의 年平均增加率로 나타내면 1965년 이후 年平均인구증가율은 2.5%이며 犯罪발생건수의 年平均증가율은 5.5%로 犯罪발생건수가 인구증가율에 비하여 2倍以上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1975년 이후에는 그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犯罪발생건수의 年平均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犯罪발생건수도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1985년 이후 더욱 빠른 상승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와 같은 범

集團이 가진 倫理觀, 文化的인 背景, 政治및 社會制度 등의 與件에 따라 범죄의 發生유무, 종류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經濟的 與件만이 犯罪현상을 유발하는 유일한 犯因性 要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이 本論文이 갖게 되는 理論的 考察部分의 限界點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犯罪發生의 推移에 대한 考察

本 章에서는 實質的으로 종합적인 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犯罪發生에 관한 자료획득이 비교적 용이한 1965년부터 1989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設定하고 동기간중 전반적인 犯罪발생의 추이와 經濟的 與件變化로 인한 地域別및 職業別 犯罪發生分布의 變化를 분석하며 분석기간중의 경제적 상황과 犯罪 발생의 관계를 비교, 검토하므로써 犯罪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 1. 總犯罪發生件數의 推移

일반적으로 人口가 증가함에 따라 犯罪의 發生件數도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5년 이후 1989년까지의 기간에 人口10萬名當 犯罪發生件數는 <表 Ⅲ-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65년 인구10만명당 犯罪발생건수는 1,519件이었던 것에 비하여 1989년에는 2,469件으로 약1.6배 증가하였으며 이것을 동기간중의 年平均增加率로 나타내면 1965년 이후 年平均인구증가율은 2.5%이며 犯罪발생건수의 年平均증가율은 5.5%로 犯罪발생건수가 인구증가율에 비하여 2倍以上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1975년 이후에는 그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犯罪발생건수의 年平均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犯罪발생건수도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1985년 이후 더욱 빠른 상승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와 같은 범

죄발생빈도가 급속하게 높아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발생의 현저한 증가추세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중요한 실질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地域別 犯罪發生件數의 推移

범죄의 발생건수를 도시와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區分하여 살펴 보면 <表Ⅲ-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表Ⅲ-1> 犯罪發生추이

單位:件, %

	人口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지역별 범죄발생 비중					도시화율 (인구5만이상)
		도시	6대도시	중도시	15만미만도시	도시이외지역	
1965	1,519	46.3	34.3	4.3	7.8	53.7	34.3
1970	1,060	54.8	41.5	6.1	7.2	45.2	41.1
1975	1,116	66.3	37.1	21.7	7.5	33.6	48.3
1980	1,658	72.3	49.0	13.9	9.4	27.7	57.3
1985	1,965	76.2	53.5	11.7	11.0	23.8	65.4
1989	2,463	81.8	55.9	16.5	9.5	18.2	70.6

- 資料 1.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 2.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 3. 치안본부, 범죄분석, 1989.

즉, 地域別 犯罪發生比率에서 보면 범죄의 대부분이 都市地域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比率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이외지역에서의 범죄발생건수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9년의 경우 전체 범죄발생건수의 약82%가 인구5만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 이외지역의 비율은 약1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1965년의 경우 도시지역의 비율이 46.3%이며 도시 이외지역의 비율이 53.7%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도시지역에 범죄발생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죄발생의 빈도가 높은 都市地域을 人口의 크기에 따라 6大都市, 中都市 및 人口15萬미만의 都市로 분류하여 범죄발생

의 정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즉, 都市地域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상당부분이 6大都市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比重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餘他都市의 경우에는 그 比重이 대체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89년의 경우 6大都市에서 일어난 범죄발생건수의 비율은 전체 범죄발생건수의 약56%에 해당되며 여타도시의 경우에는 약26%로서 범죄의 상당부분이 6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地域別 犯罪發生件數의 증가현상을 年平均增加率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즉, 都市地域犯罪發生件數의 年平均增加率은 전체 分析期間에 걸쳐 전국의 평균범죄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이외지역의 증가율은 전국의 평균증가율에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의 기간에는 中都市의 범죄의 연평균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후반기에는 대도시와 인구15만미만 도시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특히 1985년이후에는 6대도시와 中都市의 범죄증가율이 小都市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中都市에서의 범죄증가율은 全國平均增加率의 2배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分析結果에서 볼 때 1980년이후 犯罪發生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都市地域中에서도 6大都市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人口15만이상의 中都市地域에서의 범죄증가율은 餘他都市地域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의 범죄발생비중이 크고 그 平均增加率 또한 都市以外的地域에 비하여 높은 原因을 살펴보면 대체로 經濟成長에 따른 都市化의 進行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은 6대도시와 인구15만이상의 도시지역에서의 높은 범죄증가율은 우리나라 人口移動의 특징인 2단계 형태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都市化의 진행은 地域解體論과 심리적 긴장이론에 따라 범죄발생을 유발하고 이를 촉진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6大도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人口15만이상의 中都市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의 移住人口와 都市 자체의 팽창에 의한 도시화에 따라 지역적인 해체가 초기단계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가속화되며 이에 따라 이 지역주민의 심리적 긴장상태가 급속하게 고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시팽창에 따라 치안유지기관의 규모확대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의하여 犯罪發生의 增加率이 餘他地域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의 범죄증가율이 높은 또 하나의 원인을 살펴보면 犯因性 要因이 都市地域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經濟成長에 따른 산업의 도시 집중화에 의하여 각종 산업시설이 편재됨에 따라 도시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발 맞추어 유해환경업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인성 환경에 접할 기회가 확대되며 여기에 익명성, 개인의 고립화 등과 같은 要因들이 복합되어 범죄의 발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3. 職業別 犯罪發生推移

經濟가 성장함에 따라 生産構造가 고도화되고 이에 의하여 고용구조도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즉,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3次산업의 비중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총고용인력중 3次산업종사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써어비스産業從事者의 증가는 犯因性 環境에 접할 수 있는 人口數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범죄발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刑法犯피의자를 직업에 따라 분류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직업별 변화양

상은 <表Ⅲ-2>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Ⅲ-2> 職業別 刑法犯 被害者 比重 單位: %

	計	勞務者	自由業	從業員	農工商業	公務員	其他	無職
1965	100.0	13.7	3.2	5.6	29.4	6.8	41.3	26.8
1970	100.0	22.7	3.3	5.4	22.9	4.6	41.1	19.3
1975	100.0	8.8	4.0	4.4	28.2	4.2	50.4	25.2
1980	100.0	7.4	4.3	3.8	20.9	4.3	59.4	22.5
1985	100.0	9.2	4.5	5.9	20.0	6.6	53.8	20.0
1989	100.0	8.5	4.8	6.4	18.6	10.8	50.9	15.0

資料 1.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2. 치안본부, 범죄분석, 1989.

즉, 전체분석기간에 걸쳐 형법범죄자의 직업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無職 등을 포함한 不安定한 職業群인 기타의 경우이며 그 다음으로는 農工商業의 自營業主, 公務員과 社會員, 勞務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年平均增加率의 측면에서 보면 1985년 이후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공무원과 회사원인 소위 White-Color들의 계층이며 그 다음으로는 종업원, 자유업의 순서로 上記의 比率分析의 경우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刑法犯 被害者중에서 불안정한 직업에 해당되는 其他職業과 農工商業自營業主 등의 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증가추세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공무원 및 회사원과 종업원 등의 직업의 경우에는 被害者의 數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양상이 초래되는 것은 1985년 이후 3低現象으로 인하여 經濟가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됨에 따라 무직의 경우 그 비율이 감소하는 점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진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公務員과 社會員의 被害者수가 빠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공무원과 기업의 윤리의식이 점차 퇴색되어

간다는 것과 그리고 종업원의 경우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유흥적 분위기에 접할 기회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4. 其他要因에 의한 犯罪發生件數의 推移

前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景氣의 變動, 物價의 上昇, 급격한 所得水準의 向上, 所得分配의 不均衡의 深化 등에 따라 범죄의 발생건수 및 종류가 변화하게 된다는 주장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들 要因과 犯罪增加率을 비교하였다.

먼저 범죄발생건수의 증가율과 GNP성장률 및 人當GNP성장률을 비교하여 보면 <表Ⅲ-3>에서와 같다.

<表Ⅲ-3> 年平均增加率 單位:件%

	범죄증가율	GNP	人當GNP	실업율	소비자물가 상승율	소득분배계수	
						Geni계수	10分位분배율
1965~1970	-5.5	9.1	15.0	-3.0	78.4	-0.012	0.009
1970~1975	2.5	8.0	15.9	-0.3	104.5	0.059	-0.100
1975~1980	8.2	8.3	18.0	1.1	120.9	-0.002	-0.020
1980~1985	4.2	0.7	5.5	-0.8	41.0	-0.044	0.091
1985~1989	5.6	12.7	17.8	-3.2	19.9	-0.009*	0.023*

資料 1. 대검찰청, 전계서  
 2. 치안본부, 전계서  
 3.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각년도  
 4. 경제기획원, 경제교육종합교재, 1990. 7

\* 1988년 수치임

즉, GNP와 人當GNP의 증가율이 높은 기간에 범죄의 증가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景氣가 호황국면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의 발생이 감소한다는 선행된 研究結果와는 배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하며 개괄적인 비교분석에 의하여 景氣變動과 犯罪發生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간별 두 變數의 數値를 단순비교를 통하여 볼 때 特定期間은 제외하고는 全體分析期間에 걸쳐 두 變數間의 負의 相關關係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975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의 극심한 경기침체에 현저한 범죄 증가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단순히 경기의 침체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보다 경기의 침체정도와 기간에 따라 경기변동과 범죄발생간의 연관성이 변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上記의 비교에서 국민소득증가율과 범죄발생과의 正의 相關關係가 나타나는 것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범죄발생과 연관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表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所得分配의 不均衡의 程度를 나타내는 係數인 Geni계수와 10分位分配率을 검토하여 볼 때 대체로 1980년 이후 소득분배의 상황은 개선되어 지고 있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설명도 타당성을 지니지 못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所得의 증가 또는 경기의 변동이 범죄의 증가와는 직접적인 聯關關係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소득분배 불균형의 심화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켜 범죄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先驗的인 研究結果는 上記의 개략적인 비교를 통하여 볼 때 바람직한 설명방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所得의 증가로 인한 과소비풍조 및 투기의 만연 등이 소득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므로써 범죄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두 變數間의 正의 關係를 나타내는 방향으로의 설명은 全體分析期間에 걸친 수치의 변화를 감안하여 볼 때 일면의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失業率이 높아질수록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는 研究結果를 검토하기 위하여 失業率과 犯罪增加率을 비교하여 보면 1975년부터 1980년까지의 경기침체를 제외하고는 두 변수간의 명백한 正의 關係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1985년 이후의 기간중 두 變數間의 關係를 보면 失業率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증가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두 변수간의 正의 關係를 설명하기 위하여는 特定期間에 해당되는 限定的인 論理設定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실업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한 경우에만 두 변수간에 連關性을 가질 수 있으며 단순히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범죄의 증가와 連結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가의 계속적인 상승은 實質賃金水準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貨幣價値의 下落, 換物心理의 조성, 미래에 대한 不確實性 등을 야기시키게 되며 이러한 현상들은 범죄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되는 要因이 된다는 研究結果들을 前章에서 이미 검토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1965년 이후 1989년까지의 分析期間에 걸쳐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개략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동 기간중의 범죄증가율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比較한 바 《表Ⅲ-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物價의 上昇이 빠른 속도로 進行되었다고 할 수 있는 1975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간에는 범죄의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1980년 이후의 기간에는 물가의 상승속도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범죄의 증가율은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그 수준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하여 판단할 때 物價의 上昇이 일률적으로 범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으나 물가의 상승추세가 범죄의 발생과는 미약하나마 連關性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간별 물가의 상승 수준에 따라 범죄의 증가율이 변화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시 말하자면 물가의 상승정도가 일정기간에 걸쳐 상당한 폭으로 進行될 때 實質賃金 및 貨幣價値의 현저한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환물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게 되어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인플레이션의 進行수준은 1975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간을 기초로 하여 볼 때 年平均 20% 이상의 수준일 때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플레이

선의 진행수준이 이에 미달하는 수준일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진행과 범죄의 증가율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는 할 수 없다.

#### IV. 結論 및 對策

經濟成長은 경제의 구조 뿐만 아니라 경제를 둘러 싸고 있는 政治, 社會 등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교호적인 영향에 의하여 經濟의 內部 및 外部構造는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의 성장으로 인하여 변화된 經濟的 與件이 經濟外的 環境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經濟學的 觀點에서 한정시켜 分析하고자 시도한 것이 本論文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성장은 序論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화의 촉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이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 인플레이션의 유발, 소득의 상승, 소득분배의 불균형의 야기 등과 같은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經濟的 측면에서의 변화가 犯因性 要因으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부분은 Ⅱ章의 理論的 考察部門에서 검토한 바 있다. Ⅲ章에서는 Ⅱ章에서의 이론적 고찰부분을 토대로 하여 1965년 이후 1989년까지의 분석기간을 설정하고 同期間中の 범죄의 발생추세와 지역별, 직업별 구분에 따른 분류 및 經濟的 要因들의 변화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分析 및 검토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열거한다면 다음에 보는 바와 같다.

첫째, 범죄의 발생건수는 198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를 또한 가속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발생건수의 대부분은 경제의 성장으로 인하여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중에서도 6大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증가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治安서비스의 供給이

선의 진행수준이 이에 미달하는 수준일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진행과 범죄의 증가율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는 할 수 없다.

#### Ⅳ. 結論 및 對策

經濟成長은 경제의 구조 뿐만 아니라 경제를 둘러 싸고 있는 政治, 社會 등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교호적인 영향에 의하여 經濟의 內部 및 外部構造는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의 성장으로 인하여 변화된 經濟的 與件이 經濟外的 環境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經濟學的 觀點에서 한정시켜 分析하고자 시도한 것이 本論文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성장은 序論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화의 촉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이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 인플레이션의 유발, 소득의 상승, 소득분배의 불균형의 야기 등과 같은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經濟的 측면에서의 변화가 犯因性 要因으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부분은 Ⅱ章의 理論的 考察部門에서 검토한 바 있다. Ⅲ章에서는 Ⅱ章에서의 이론적 고찰부분을 토대로 하여 1965년 이후 1989년까지의 분석기간을 설정하고 同期間中の 범죄의 발생추세와 지역별, 직업별 구분에 따른 분류 및 經濟的 要因들의 변화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分析 및 검토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열거한다면 다음에 보는 바와 같다.

첫째, 범죄의 발생건수는 198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 또한 가속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발생건수의 대부분은 경제의 성장으로 인하여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중에서도 6大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증가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治安서비스의 供給이

人口의 增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인구15만이상의 中都市地域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범죄발생건수의 축소와 범죄증가율의 억제를 위하여는 6大都市와 인구15만이상의 中都市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治安싸이버스의 공급증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경제의 성장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용구조도 변화됨에 따라 職業別 刑法범죄의자의 分布가 변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체분석기간에 걸쳐 형법범죄의자중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은 무직을 포함한 불안정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직업으로 나타났으나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刑法범죄의자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직업은 從業員과 White-Color 職業群이라고 할 수 있는 公務員과 會社員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餘他 職業의 경우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比重面에서 위에서 언급한 직업군과 균등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범죄의 발생이 全職業群에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양상을 도시지역에 범죄발생이 집중되어 있는 점과 연관시켜 볼 때 도시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상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보다도 도시지역에 유흥, 향락업소가 밀집되고 고용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환경에 접할 기회가 증대하였기 때문에 발생하게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유흥, 향락업소에 대한 영업제한 내지 業所開設의 억제를 위한 制度的 補完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White-Color 직업군의 범죄에 대비하여 公職者및 企業倫理意識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범죄발생건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其他職業群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유지함으로써 고용수요를 창출하여 실업을 줄이고 직업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상승이 범죄의 증가율과 연관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過消費및 投機 등에 의한 계층간의

위화감 내지 박탈감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과소비와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및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지며 건전한 소비생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物價의 上昇과 失業의 增加가 범죄의 증가에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하여는 물가와 고용의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경제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범죄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短期間內에 달성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변화된 경제환경및 수준에 걸맞는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관의 定立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변화된 새로운 경제및 사회 환경과 질서에 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경제의 성장이 지속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시설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범죄는 점차 기동화되고 광역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하여 경찰의 통신및 차량 등과 같은 장비의 보완 뿐만 아니라 경찰부서간의 협력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득수준이 상승함으로써 大量消費時代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하고 윤리의식이 결여되는 양상이 전개되어 배금주의의 팽배, 집단적 이기주의의 성행 등으로 범죄의 잔인성 또는 강력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직업에 관계없이 전직업에서 균등하게 범죄의 발생이 이루어지며 특히 White-Color직업의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도시화의 진행은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는 도시민의 경쟁이 가열화되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망각하기 위하여 마약 등과 같은 향정신성 약품의 남용을 통하여 현실을 도피하려는 풍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의 규제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經濟企劃院, 經濟教育綜合教材, 1990. 7.
2. ———, 主要經濟指標, 各年度.
3. ———, 韓國統計年鑑, 各年度.
4. 大檢察廳, 犯罪分析, 各年度.
5. 大韓地方行政共濟會, 地方行政, 1990. 5.
6. 法務研修院, 犯罪自書, 1986, 1988.
7. 수사연구사, 수사연구, 1991. 1.
8. 慎鎭揆, 범죄학검 형사정책, 法文社, 1987.
9. 李圭貳, 犯罪學, 世宗閣, 1969.
10. 李鐘元, 經濟犯罪論, 日新社, 1974.
11. 治安本部, 犯罪分析, 各年度.
12.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의 주요지표, 1989.
13. 韓國社會學會, 韓國社會學 第22集, 1988 여름호, 1988.
14. 吉益脩夫, 犯罪學概論, 有斐閣, 1964.
15. 小川太郎, 刑事政策論講義 第2分冊, 法政大學出版局, 1984.
16. 中華民國, 中央警官學校, 犯罪學.
17. I. Silver, Criminology, A Division of Harper & Row, Publishers, 1981.
18. L. J. Siegel, Criminology, West Publishing Co, U.S.A, 1983.
19. M. R. Haskell and L. Yablonsky, Criminology: Crime and Criminality,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U.S.A., 1978.
20. R. H. Leftwich and A.M.Sharp, Economics of Social Issues, Business Publication, Inc, U.S.A., 1982.
21. R. Quinney, Criminology, Little, Brown and Company, U.S.A., 1979.
22. S. Stack, "Income Inequality and Property Crime," Criminology Vol.22, No.2, May 1984.

23. W. C. Bailey, "Poverty, Inequality and City Homicide Rates, *Criminology* Vol. 22, No. 4, Nov. 1984.
24. W. F. Gabrielli, Jr. and S. A. Mednick, "Urban Environment, Genetics, and Crime," *Criminology* Vol. 22, No. 4, Nov. 1984.